

부산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가단30639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고은, 이중섭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재준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E과 피고 C 사이의 2019. 7. 1.자 116,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E과 피고 D 사이의 2019. 6. 21.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23,418,679원, 피고 D은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E은 2019. 5. 16.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살해하였다. E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9. 11. 15.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81호)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원고 A의 상속분 3/5, 원고 B의 상속분 2/5).

다. E은 2019. 6. 18. 자신의 동생인 G을 대리인으로 하여 H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2019. 6. 21.경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마. G의 사위인 피고 C는 2019. 7. 1.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중 116,000,000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2019. 7. 3.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600만 원은 2019. 7. 9. 및 7. 10.에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056호로 E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H을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21. 9. 15.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E은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H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E과 H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5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H은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2. 8. 1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E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6. 21.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증여하였고, 2019. 7. 1. 피고 C에게 116,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다.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피고 C 부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G으로부터 ‘잠시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할 것이니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2019. 7. 1. G이 주는 수표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출금이 가능한 날인 2019. 7. 3.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1,600만 원도 2019. 7. 9. 및 7. 10.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E으로부터 116,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D 부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부산 동구 I 소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2019. 6. 20. E, J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